
2020년 하반기 융복합SW강소기업육성사업 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지원(R&D)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라북도 SW/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아이디어의 최종 결과물 완성을 위한 제품 및 융복합 SW/IT 기술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08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근거 및 관련규정

□ 지원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 제6조(지역산업 육성지원)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2. 지원개요

- 사 업 명 : 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지원(R&D)
- 과제 수행기간 : 2020. 09. 01 ~ 2021. 08. 31. (12개월)이내
- 지원내용 : 우수아이디어의 제품화 완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전북 소재(예정 포함) SW/IT관련 기업¹⁾
 - ※ 융복합SW 연계 과제 참여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도내/외 소재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모두 가능함
- 지원규모 : 5.8억원 이내

1) [붙임1]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에 해당하는 분야

3. 연구내용

○ (정량목표 제시 분야)

- (필수1) 각 상황을 인지하고, 무인관제 수준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알고리즘 등 SW개발
 - ① 불법 낚시 및 어업 행위 관련 인지/대처, ② 불법 취사활동 등 화재위험 상황 관련 인지/대처, ③ 감시 구역 내 조난자 및 거동수상자 관련 인지/대처
- (필수2) 무인이동체 임무수행 관련
 - ① 임무연속성(지속시간) (※단독 임무 수행 기준 20분 이상 목표 제시 필요)
 - ② 영상기반 식별개체 수, 인식 정확도 목표치 설정
- (필수3)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서버시스템 개발
- (추가) 상기 필수 제시 분야 외 본 연구개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 정량목표 3가지 분야 제시

→ (유의사항) 상기 정량목표(필수, 추가)는 단순(목표:1식) 개념이 아닌 세부개념(예:인지율, 오차율 등) 제시가 필요하며 지정과제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내용 기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서버시스템 개발
 - 스탠드얼론 서버/DB 구축 또는 클라우드 기반 서버/DB 구축
- 무인이동체와 서버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방식은 제한 없으나 수신체계 제시 필요
- 비행체 임무범위 확대와 서비스 상용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인비행체(필수) 외에도 수상용, 지상용 무인 이동체를 융합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제시가 필요함

→ (유의사항)

1. 지상제어국(GCS) 구축은 금번 개발목표인 데이터서버시스템과는 별개로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다만, 향후 결과물 실증을 고려하여, 본 개발시스템과 지상제어국 연계를 통한 서비스 시나리오 제시가 필요함

※ 본 지정과제는 실용화단계(TRL 7~9) 전(全) 단속 서비스 SW개발이 주요목표임에 따라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 산정은 불가함

기술분류	대분류(융합서비스)-중분류(공공융합 서비스)-소분류(환경 ICT)
TRL	실험단계(3~4단계) ~ 시작품단계(5~6단계)
연구유형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O), 사업화 (O)
과제특징	정책지정(), 혁신도약형(O), 경쟁형(O), 표준화연계(), SW자산뱅크등록대상(), 공개SW(), 기술료비징수()

※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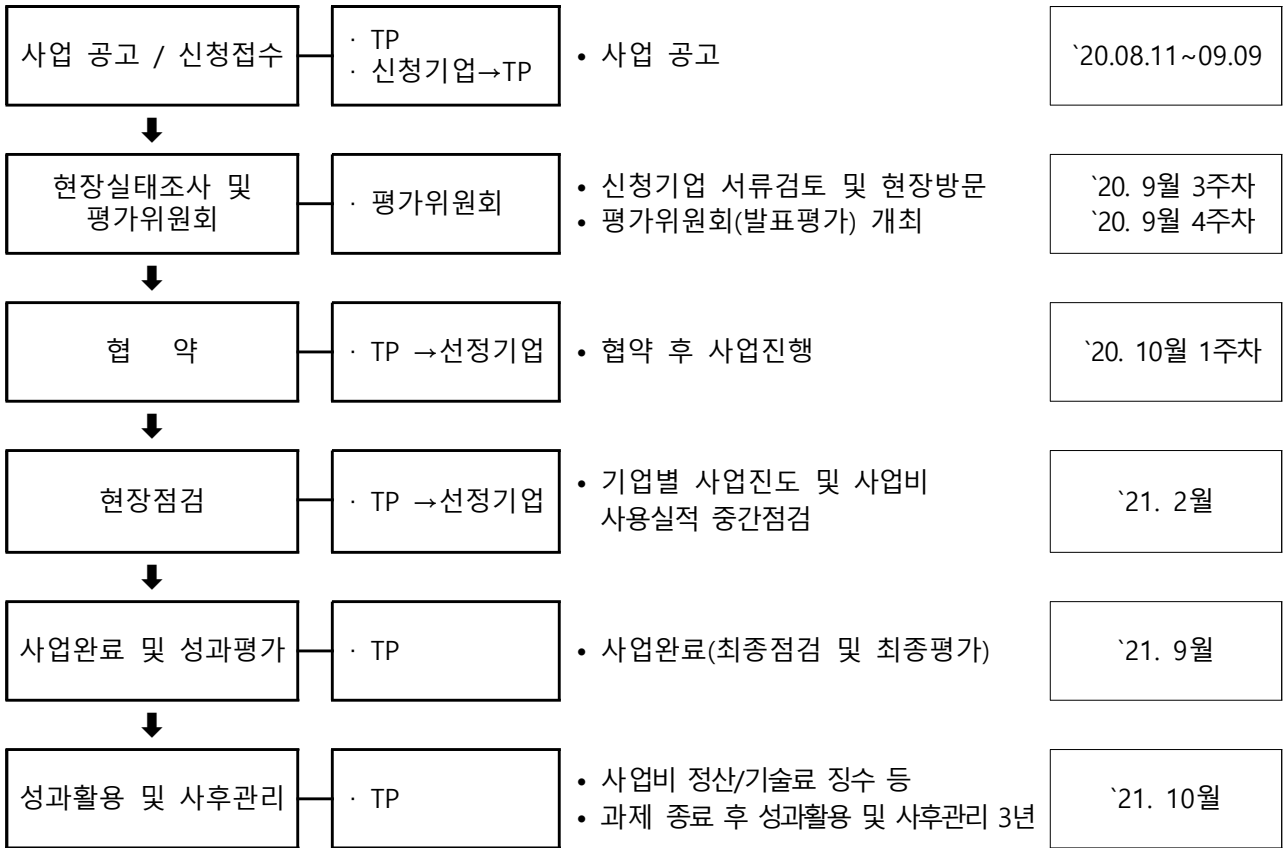
사업비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총사업비의 25%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단,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10% 이상 현금부담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관 : 도내 소재(예정) SW.IT기업 ② 참여 : 도내 소재(예정) 기업 및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SW 연계 과제의 경우 도내 제조업 등 SW기업 외 기업도 참여 가능함 (단, 인건비 산정은 불가함)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② 도내 사업자등록(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완료된 기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이전/개설 예정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더불어 전북도내 투자확약 또는 입주계약 관련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권면함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SW강소기업 20개사 : 가점 5점
기술료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지원금 10%, 단. 관련규정 따라 감면 및 면제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준용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2년 분할 납부 가능하며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은 기술료 면제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석함
향후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 [우수]과제에 한하여 연계지원 우대사항 적용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전시회 참가, 해외판로 개척 등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기업 1개사가 지원분야별(A, B, C형) 다중 지원은 불가함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조건으로 지원금 선지급 진행예정(발급비용은 별도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기간(협약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내기업(20개월 이내) ② 이전/개소 예정기업(42개월 이내) → (유의사항) ▶ 주관기관이 도내 기업일 경우 : 상기①기준으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이 이전/개소 예정기업일 경우 : 상기②번 기준으로 1부 2020년 상반기 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지원사업 선정과제는 지원불가함

< 예시 : 지원금 1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			총 사업비 (100%)
		현금	현물	소계	
중소기업 (7년 이내 기업)	영리 100,000	3,400	30,600	34,000	134,000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7년 이상 기업)	영리 100,000	6,800	27,200	34,000	134,000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3. 추진 절차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선정 대면평가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과제에 한하여 사전 공지 예정임.

4. 신청 및 접수요령

□ **공고기간 : 2020. 8. 11(화) ~ 9. 9(수)**

-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 ※ 각 홈페이지 첨부파일 통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접수기간 : 2020. 8. 24(월) ~ 9. 9(수) 18:00까지**

- **(유의사항)** ① 전산접수(전북R&D종합정보시스템)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 시스템에 제출된 과제만 인정됨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과제는 자동탈락되며 접수불가사항 당일 통보예정)
- ② **접수마감일은 데이터 접속증가로 인하여 종료 1시간 전 반드시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신청(접수)요령

- ①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과제신청]에서 접수
- ② 사업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 스캔 후 최종 **"*.zip"** 파일명을 **"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지원 신청서류-(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No.	구 비 서 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직인필수)	전자파일 (HWP)
2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과제참여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각 1부	PDF
3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PDF (참여)
4	사업자등록증 및 2020년도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단, 이전/개설 예정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더불어 전북도내 투자확약 또는 입주계약 관련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권면함	PDF (주관, 참여)
5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019, 2018년 순으로 첨부요망)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유의사항) 관련 규정 근거 최근(2019년) 결산기준 완전자본잠식일 경우 지원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이 완료되어 재무제표 제출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확정 재무제표만 제출서류로 인정함</p> </div> <p>*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불가함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만 제출</p>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컨소시엄인 경우 참여기관 포함)	
7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약약서	
8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C형 지원과제 주관기관은 필수)	
9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확인서	
10	사업장 이전/개소 약약서(※지원과제 주관/참여 중 이전/개소 예정기업일 경우)	

[공통사항]

1. 제출서류 PDF 변환 시, 반드시 기본인쇄(1페이지 1쪽)로 설정요망(1페이지 2쪽 변환 불허)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이 누락된 경우 접수 서류 제출 재요청될 수 있음(기한 초과시 재요청될 수 있음)
3. 각 항목별 서류 제출시 반드시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예시) 재무제표 제출 시, 2019, 2018년 순으로 정리후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4. 재무제표 제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제출

□ 문의처 : 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SW융합팀 고영진 연구원

Tel: 063)219-2172 / E-mail: yjgo@jbtp.or.kr

5. 평가항목

□ 선정절차

- ① 서면평가 : 제출서류,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평가기준 의거 과제 필요성 여부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 선정되며 해당과제에 모두 안내 예정임
- ② 현장점검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③ 선정평가(발표평가) : 신청과제별 총괄책임자 발표(발표, 질의 30분내외)
- ④ 과제선정 : 평가결과 의해 사업범위 및 예산 등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 **(유의사항)** ①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서면/선정평가 모두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70점"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A, B형은 통합으로 고득점순 선정하며, C형은 A, B형과 별도로 고득점순 선정함)

□ 평가기준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사업의 목적성 부합 및 보유역량 (40)	과제 필요성	○ 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기업 역량	○ 사업화 실적 및 관련 제품의 매출 규모 ○ 제품 개발·상용화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10
	기술수준 및 경쟁력	○ 기술력의 독창성 및 국내·외 기술수준 대비 우수성 ○ 기존 시장 제품과의 독창성, 우수성, 경제성 여부 ○ 적용기술에 대해 국내·외 지적재산권 등 보유 여부	20
상용화 성공 가능성 (35)	사업계획의 적정성	○ 과제목표의 구체성 및 예산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절성 ○ 사업화를 위한 제품화 경험, 인력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5
	상용화 실현가능성	○ 기존 제품 및 기술의 완성도 수준 ○ 시장·고객 요구 대비 기술수준·성능·규격의 적정성 ○ 상용제품의 시험인증 및 품질제고 방안의 적정성	20
경제성 및 파급효과 (25)	경제성	○ 과제결과물의 수요처 확보 가능성 ○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 등 수익창출 가능성 ○ 기술 및 제품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적재산권 확보	15
	파급효과	○ 신규 시장 및 서비스의 창출 가능성 ○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대효과 ○ 관련 개발기술의 타 산업분야 확산 가능성	10
합 계			100

6.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선정평가 이후 과제 수행 중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분야, 주관기관 자격, 컨소시엄 구성 여부 등 요건 미충족할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유사여부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단, 기 개발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평가위원회 의견 따름)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포함), 공동연구기관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에 대해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 불가능한 경우 등

○ (영리기관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 등이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을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2019년)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 2019년도 국세청 확정 표준재무제표 확인결과 규정에서 명시된 지원대상 제외 대상(자본전액잠식) 해당될 경우 선정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선정취소, 협약해약 될 수 있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총액이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협약시에 한하여 기존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현금산정 불가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하“공공재정지급금”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가금

-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지원금의 5배
- ②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③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창조융합	생활안전 ICT	안전강화
		공공서비스
		범죄예방
		교통약자
		이력관리
	산업융합 ICT	의류·섬유
		스포츠
		문화
		3D 프린팅
		제조융합
	의료 ICT	의료 디바이스
		의료 플랫폼
		의료 서비스
		병원간 의료정보 교환
	에너지 ICT	의료정보 DB
		에너지 생산
		에너지 저장
		에너지 소비
	농축수산 ICT	에너지 거래
		생산
		유통
국방 ICT	거래	
	정보감시정찰 시스템	
	지휘통제체계 시스템	
	정밀타격 시스템	
기타	전장환경 시스템	
	기타 ICT 융합기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플랫폼	모바일 융합서비스 기술
		모바일 코어망 기술
	이동통신 액세스 시스템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기술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기술
		응용 및 특화 시스템 기술
	이동통신 단말 및 부품, 시험인증	융복합 단말기술
		융복합 부품기술
	이동통신 시험/인증기술	
네트워크	시스템	코어망
		액세스망
		유무선 융합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서비스·제어	특수 목적망
		인프라
		미들웨어
	소자·모듈	제어관리 소프트웨어
		광 소자·모듈
		전자 소자·모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창의기술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모듈
		양자통신
		미래인터넷 인프라
		인터넷 사이언스(네트워크+사회과학 등)
전파·위성	전파 기반	스펙트럼 공학
		안테나/전파전파
		RF/초고주파 소자·모듈
	전자파 환경	전자파 기기보호
		전자파 인체보호
		RF 계측·분석
	전파 응용	의료, 보안, 레이더 등 전파응용
		에너지(전력) 전송 및 수집
		그 외 생활과 밀접한 전파 활용 분야
	위성	통신 탑재체
위성 주파수		
위성 방송·통신·항법 서비스		
방송	방송미디어 창작 플랫폼	방송미디어 제작/획득
		방송미디어편집 tool 및 SW 플랫폼
	방송 송수신 인프라 기술	채널효율화, 부복호화
		전송, 수신
	방송미디어 장비·단말	제작장비
공공복지방송 및 재난방송	송수신 장비, STB, TV 장애인 지원방송, 재난방송	
정보보호	공통기반보안	암호기술
		인증기술
		부채널 방지
		SW, H/W 취약점
		악성코드 분석
	네트워크 보안	유선 네트워크 보안
		무선 네트워크 보안
		보안관리
	디바이스/시스템보안	SoC 보안
		디바이스 보안
		시스템 보안
	서비스보안	클라우드/빅데이터 보안
		DB·웹보안
		콘텐츠 보안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사기대응
		디지털포렌식
	물리보안	휴먼/바이오인식
		CCTV 감시/관제
		무인 전자 감시
융합보안	산업제어시스템보안	
	항공/조선 보안	
	자동차 융합 보안	
	헬스케어 보안	
기반SW·컴퓨팅	시스템SW	서버/클라이언트 플랫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저장시스템 SW
		데이터관리 SW
		분산/병렬 처리 SW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언어 및 개발도구
	지능형SW	자연어처리 SW
		영상인식 SW
		음성인식 SW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응용 SW
		빅데이터 분석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 기술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 기술
		클라우드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기술		
클라우드간 상호 운용 기술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 기술		
융합SW	응용SW	산업응용 SW
		업무용 SW
		모바일 SW
		시뮬레이션 SW
	응용 플랫폼	응용 DB
		스마트기기 플랫폼
		임베디드 플랫폼
	인터넷 SW	SW공학
		소셜웹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응용
	인공지능 응용 SW	빅데이터 응용
		음성처리기술 응용 SW
		영상처리기술 응용 SW
		서비스 지능화 SW
	스마트 서비스	사물인터넷/사물통신
IoT 서비스기술		
IoT 플랫폼기술		
IoT 네트워크기술		
IoT 단말기술		
스마트홈		IoT 보안기술
		스마트홈 플랫폼
		홈네트워크
		스마트정보가전
스마트미디어		인터랙티브 UI/UX
	IPTV/스마트TV	
	오픈스크린/공간미디어	
		감성미디어/자율미디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맞춤형 광고	
		소셜미디어	
		스마트미디어 단말	
	RFID/USN		RFID 태그 기술, 리더
			RFID 미들웨어
			모바일 RFID
			센서노드 및 시스템
			센서노드 미들웨어 기술 및 SW
			센서 네트워킹 기술 및 망연동 기술
			RFID/USN서비스 플랫폼
			지능형융합서비스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착용형 디바이스
			차세대 초고속방송/통신 디바이스
			ICT 융합 디바이스
	그린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센터
	미래 컴퓨팅		CPS(Cyber Physical System)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슈퍼 컴퓨팅			
디지털콘텐츠	실감형 영상 콘텐츠	컴퓨터그래픽스/비전	
		3D/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인터랙션 콘텐츠		AR/MR/VR
			Natural UI/Natural UX
			오감인식
			뉴로 콘텐츠
			감성·인지웨어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분석·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상황인지 콘텐츠
			N-Screen 콘텐츠
	콘텐츠 유통/서비스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응용 서비스(SNS, 빅콘텐츠 등)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KSIC

세 목	내 용						
인건비	<p>□ 총 인건비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업(SW기업) : 인건비 산정 가능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 기관 : 도 지원금 25% 이내 산정 가능 - SW기업*을 제외한 도내 기업 : 인건비 산정 불가 <p>(* 본 사업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한 기업은 모두 해당)</p> <p>□ 내부인건비</p> <p>① 기업 :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액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 산정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인 자</td> <td>-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X 12개월 X 참여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미만인 자</td> <td>-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X 12개월 X 참여율</td> </tr> </tbody> </table> <p>※ 1년 미만인자 : 근무년수 1년 미만으로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 알 수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존/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정 방법</u> - 대표이사는 인건비 현금 산정 불가(※주관/참여 모두 해당) - 신규 인력은 최근 월 평균급여X참여율X12개월 산정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관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제2장 사업비 산정</p> <p>1.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이 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2. 상기 1호에 따라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 (현금+현물)의 30퍼센트 이상일 경우, 협약시에 한하여 기존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p> </div> <p>② 대학 및 출연연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한해 참여율을 10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계상가능. 단,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인건비 현금계상 불가</p> <p>③ 공통적용 : 급여총액에 4대 보험과 퇴직총액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p>	구분	세부 산정 기준	1년 이상인 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X 12개월 X 참여율	1년 미만인 자	-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X 12개월 X 참여율
구분	세부 산정 기준						
1년 이상인 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X 12개월 X 참여율						
1년 미만인 자	-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X 12개월 X 참여율						

세 목	내 용
	<p>④ 학생연구원 인건비 : 참여율 100%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기준 X 참여기간 X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p>※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승인 절차 없는 인건비 지급 발생시 변경 요청 시점 이전 지급 인건비 불인정</p>
<p>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p>	<p>①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산정 불가(※ 범용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 산정 불가)</p> <p>② 10,000천원 이상 고가 기자재* 구입 및 시제품 제작시 사업계획서에 상세 내역 첨부요망(견적서 및 사용용도 등)</p> <p>* 사업 선정평가 이후 기자재 구입비 편성 불가</p> <p>③ 시약 및 재료 사용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세부 구매예정내역 첨부</p> <p>④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불가하며, 시험 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p> <p>⑤ 비영리기관에 한해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산정가능</p> <p>⑥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 가능 (단, 전담기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불허될 수 있음)</p> <p>※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입 시 물품검수조서, 구입 사진 구비 필수</p>
<p>연구활동비</p>	<p>[사용 용도]</p> <p>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교육 훈련비, 시험분석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등</p>

세 목	내 용										
	<p>① 전문가활용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며, - 동일인에게 강사료 및 원고료 이중지급 불가 - 자체 기준이 없을시 전북테크노파크 전문가활용비 산정 기준으로 지급 - 사업협약체결시 수행기관 전문가활용비 지급 자체 기준 자료 제출 <p>② 위탁정산수수료 : 회계법인의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로 주관기관에서 산정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금 규모</th> <th style="text-align: center;">표준 수수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5천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right;">600천원</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VAT불포함</td> </tr> <tr> <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right;">800천원</td> </tr> <tr> <td>1억원 이상 3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천원</td> </tr> </tbody> </table> <p>③ 과제와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등은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p> <p>④ 교육·세미나·문헌구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 경비는 불인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항목의 경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 <p>⑤ 행사개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장소 사용료 및 현수막 등 산정 가능 - 세미나 개최 증빙자료 필수 첨부(서명록, 행사사진 등) 등 <p>⑥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p>※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연구수당 편성불가</p> <p>※ 연구활동비는 사업비 변경 통보/승인을 통한 증액 불가 → 연구장비·재료비 변경을 통한 연구활동비 증액 불가</p> <p>※ 연구활동비 세목간 변경은 각 세목 지원금산정 최대금액 이내에서는 변경 가능 (ex : 세미나 비용 감소를 통한 회의비 증액은 지원금의 3%이내 까지 가능)</p>	지원금 규모	표준 수수료	비고	5천만원 미만	600천원	VAT불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지원금 규모	표준 수수료	비고									
5천만원 미만	600천원	VAT불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세 목	내 용
연구과제 추진비	<p>[사용 용도] 국내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p>
	<p>① 국내여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여비 - 여비는 소속기관 자체기준에 의해 산정가능하며, 협약시 자체 기준 자료 제출 - 자체 기준이 없을시 전담기간(전북TP) 국내여비 산정 기준 적용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p> <p>② 사무용품비 -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슬라이드제작비 등 - 지원금 2% 이내 산정, 검수조서,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p> <p>③ 회의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편성가능 ⇒ 지원금의 3% 이내 편성</p>
간접비	<p>① 기관공통운영경비 :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과제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비영리기관만 산정 가능) ⇒ 지원금의 5% 이내</p> <p>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연도에 본과제와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p>
위탁사업비	<p>① 주관기관에서 참여 또는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로 지원금의 40%를 초과 할 수 없음</p>

붙임 4**[예시] SW분야 공인인증기관**

연번	기관명	지역
1	전남테크노파크 신뢰성평가팀	순천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성남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서울
4	한국정보보안기술원(KOIST)	서울

※ 위 제시된 기관 외에도 SW분야 공인인증기관이면 모두 가능함.